



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

[시행 2023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497호, 2022. 12. 20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고용보험기획과), 044-202-7918

1.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 ·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(월)
1등급	1,820,000
2등급	2,080,000
3등급	2,340,000
4등급	2,600,000
5등급	2,860,000
6등급	3,120,000
7등급	3,380,000

2. 법 부칙(법률 제10894호)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

월 2,600,000원

3. 행정사항

가. 시행일: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재검토기한(3년):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.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